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1/2)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제출처 : 더리치먼드미아)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서약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무주택서약서, 기존주택처분 관련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 내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복구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구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직계비속	·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대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서류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전전년도 사실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동산 공시가격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당사주택전시관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제출처 : 더리치먼드미아)
부적격 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적격 소명 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임이 명시된 공적 서류 · 기타 부적격 소명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확인 시점

소득산정의 대상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자료가 발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소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시점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강사 등)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①, ②, ③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재무제표(직인날인) ④ 재직증명서	① 등기소 ② 세무서 ③, ④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및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및 위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전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세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조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시 외 위택스 (www.wetax.go.kr) ④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www.wetax.go.kr)